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Quickly Bana, Quality Bana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047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2년 6월 2일

www.banapresso.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년 4월 4일

바나프레소

정 보 공 개 서

(주)바나풀에프엔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바나풀에프엔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9, 3층(삼성동, 바나풀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811-1111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70-4512-0296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바나풀에프엔비	바나프레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9, 3층(삼성동, 바나풀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10.26	2017.10.26	송민기	1811-1111	070-4512-0296
	법인등록번호	110111-6549905	사업자등록번호	358-87-0086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송민기	바나프레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9, 3층(삼성동, 바나풀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민기	1811-1111	070-4512-0296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 · 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바나프레소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바나프레소	바나프레소는 "Quickly Quality Bana"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빠르게"와 "품질"이라는 두 가지 핵심가치 아래, 항상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피 & 디저트 브랜드입니다. 2017년 런칭 후 2024.4월 현재, 강남권역 50여개 매장을 포함, 서울·경기 주요상권에서 100여개의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말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 30여개의 가맹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 호	바나프레소 OO점	
상표	BANAPRESSO 바나프레소	상표 등록번호 : 제40-1383403
		상표 등록번호 : 제40-1379247
광 고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옥외전광판 등을 이용한 다양한 광고홍보활동 및 프로모션 진행

그 밖의 영업표지	 Quickly Bana. Quality Bana.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1,876,044	42,768,545	-20,892,501	30,126,429	-5,094,972	-5,291,302
2023년	23,188,861	49,603,913	-26,415,051	40,714,727	-4,446,067	-5,522,550
2024년	21,775,790	51,877,593	-30,101,802	47,832,646	-2,952,592	-3,686,750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송민기	대표이사	2003.6 ~ 현재	바나풀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업 총괄
			2017.10~현재	(주)바나풀에프엔비 대표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39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바나프레소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바나프레소 BANAPRESSO (상표권)	당사가 허락한 상품, 용역	2017.9.28 출원 2018.8.1 등록	출원 제4020170123817	(주)바나풀 에프엔비	2028.8.1
			등록 제40-1383403		
banapresso	당사가 허락한 상품, 용역	2017.12.22. 출원 2018.7.18. 등록	출원 제4020170165311	(주)바나풀 에프엔비	2028.7.18
			등록 제40-137924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바나프레소 가맹사업 현황

1. 바나프레소를 시작한 날 : 2022년 6월 2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7년 12월 1일)

2. 바나프레소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바나풀에프엔비	바나프레소	송민기	2022.6 ~ 현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9, 3층(삼성동, 바나풀빌딩)

3. 바나프레소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부문	상품
바나프레소	커피	커피, 음료, 마카롱/마핀, 샌드위치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바나프레소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8	2	86	118	22	96	148	52	96
서울	83	2	81	98	11	87	118	30	88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1	1	-
인천	-	-	-	1	-	1	1	-	1
광주	-	-	-	-	-	-	-	-	-
대전	-	-	-	1	1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5	-	5	13	5	8	19	12	7
강원	-	-	-	1	1	-	2	2	-

충북	-	-	-	1	1	-	2	2	-
충남	-	-	-	2	2	-	2	2	-
전북	-	-	-	1	1	-	1	1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1	1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바나프레소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2	-	-	-	2
2023	2	20	-	-	-	22
2024	22	30	-	-	4	52

6. 바나프레소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바나프레소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바나프레소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52	218,628	17,638	418,930	11,916	107,633	2,406	41곳
서울	30	234,666	20,388	393,219	11,916	119,757	3,299	24곳
부산	-	해당없음						
대구	1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1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12	168,500	14,225	339,587	8,597	107,633	2,513	9곳
강원	2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2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2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이하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52개가 아닌 실제 41개 가맹점의 연간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바나프레소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나프레소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52	406일(13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바나프레소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바나프레소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연중	2,124,735	2,124,735		
광고	광고선전비	연중	1,943,889	1,943,889		
판촉	판매촉진비	연중	180,845	180,845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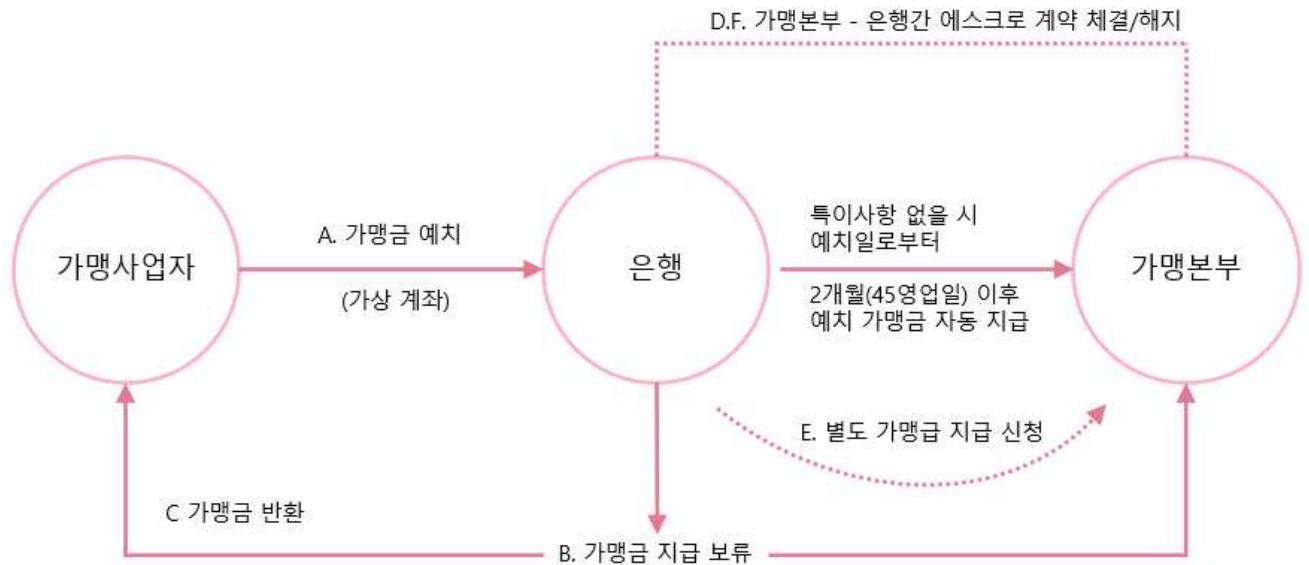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테헤란로금융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02-553-6347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체결일에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 에스크로 인터넷 홈페이지(esc.woribank.com)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상단의 My 에스크로 ⇒ 가맹금예치신청 ⇒ 가맹점주 정보등록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주)바나풀에프엔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하여는 아래의 도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가맹금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바나프레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9,900				
가입비	5,500	계약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오픈교육비	3,300	계약체결일	교육 시작 이전 해지	오픈 교육 진행	
오픈지원비	1,100	계약체결일	오픈 업무 이전 해지	오픈 업무 진행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일	가맹금 미지급, 대금 채무, 손해배상액의 지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11,900
가입비	5,500

오픈교육비	3,300
오픈지원비	1,1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9,300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	6,500		발주 시	제작 전 계약취소	개수/면적에 따라 상이
인테리어	협력업체	20,000	2,000	공사계약 시	공사 전 계약취소	33.3m ² 기준
도면비	당사	2,500	250	공사계약 시	도면 작업전 계약취소	33.3m ² 기준
인테리어 감리비	당사	2,500	250	공사계약 시	공사 전 계약취소	33.3m ² 기준
시설집기	당사	28,000		발주 시	물품 미공급 시	설비/집기에 따라 상이
의탁자	당사	2,500		발주 시	물품 미공급 시	면적/구조에 따라 상이
주문관리시스템	협력업체	800		공사계약 시		최소운영대수
초도물품 비용	당사	6,500		영업 개시 15일 이전	물품 미공급 시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와 최종 협의 및 승인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오픈교육비 납입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자일 것
종업원	가맹점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만19세 이상일 것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자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바나프레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종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당사	월165	매월 1일		기간 경과	
교육훈련비	당사	550	교육 10일 전	교육 불참	교육 이수	
광고분담금	당사	행사별 분담				
점포환경 개선비용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된 상품권 권면금액의 11% 수수료를 분담				
유료포인트 수수료분담금	당사	고객이 포인트(유료, 보너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된 포인트를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2.2%를 공제한 나머지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입금				
지연이자	당사	연19%	지급하는 날까지			

※ 유료포인트와 보너스포인트에 대하여는 본 정보공개서 25쪽 9.광고 및 판촉활동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수량을 조사	년 1회	문의 : 1811-1111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년 1회	문의 : 1811-1111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당사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 시 별도의 재가맹비를 받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바나프레소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바나프레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별첨2]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바나프레소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바나풀주식회사	계열회사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커피, 음료, 마카롱, 머핀, 샌드위치	원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모든 상품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3]과 같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음료 전문점	바나프레소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2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간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간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가맹점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동의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바나프레소'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바나프레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네이버쇼핑	https://smartstore.naver.com/banapresso	MD 및 더치커피	가맹본부 직접 배송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8%	82%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바나프레소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③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 그 밖에 작위 또는 부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갑이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바나프레소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거나(파산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주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처분이나 절차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이나 집행절차가 취하, 취소, 해제, 기각, 각하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피고용인의 쟁의행위는 불가항력 사유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45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계약의무 불이행이나 가맹계약 유지가 어려운 객관적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45조2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우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45조3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1811-1111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활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 명의의 가맹계약서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바나프레소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커피, 음료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1811-111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바나프레소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 7시 ~ 오후 11시	연중 무휴	문의 : 1811-1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현장 시정권고 및 조치 → 완료	비정기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모의 구매(주문) → 고객서비스 확인 → 현장 시정권고 및 조치 → 완료	비정기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표준화 및 품질 확인 → 현장 시정권고 및 조치 → 완료	비정기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상태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바나프레소 영업표지 이미지 제작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브랜드/상품	50%	50%를 가맹점사업자 전원이 균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행사 시행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브랜드/상품 + 가맹점모집	60%	40%를 가맹점사업자 전원이 균분		
	가맹점모집	전액부담	없음		
판촉	할인행사	사전공지 비율에 따라 분담 비율이 사전공지되지 않은 경우 가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증정행사	행사 참석 결정	동의시 전체 적용
팜플렛 등 제작	행사 시행	
기타 개별행사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다만, 지역별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이나 그 수에 비추어 어느 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액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지역의 인구와 소득 수준, 상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존부와 그 수, 사회기반시설 등 인프라 현황,『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 획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부담액을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이 주문한 메뉴에 고객 주문정보가 포함된 라벨을 부착하여 서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 매장이 라벨을 부착하는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라벨 부착을 위한 라벨프린터 가동을 상시 확인해야 하고, 라벨지를 정기적으로 발주하여, 라벨지가 없이 서비스 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 · 판촉 활동의 내용을 당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유료포인트 서비스

당사는 고객의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진 등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선지불 포인트 충전 서비스인 "유료포인트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포인트는 점포내 키오스크 및 바나프레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나프레소 전 지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14세이상/본인인증 필요)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이 점포에서 유료포인트로 제품결제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1포인트=1원).

유료포인트는 바나프레소 내에서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포인트 적립, 쿠폰과 동시사용, 현금 영수증 처리(충전포인트는 충전시점이 아닌 포인트 사용시점에 매출로 인식) 등 혜택 역시 카드/현금 결제 시와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료포인트는 적립(멤버십)포인트인 바나포인트와 동시사용 불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바나포인트 > 유료포인트 > 잔돈포인트 순으로 사용되도록 권장, 같은 포인트내에서는 만료일자가 가까운 포인트부터 먼저 차감됩니다.

유료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입니다. 구매 후 사용이력이 없는 충전포인트 건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전액 포인트 등록 취소가 가능하며, 7일이 지났거나 사용이력이 있는 경우, 유료포인트의 경우에는 최종 충전 후의 합계 잔액을 기준으로 그 잔액의 60% 이상 사용된 경우 남은금액 전액환불 가능합니다.

유료포인트 등록취소 및 환불은 모두 당사가 운영하는 바나프레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며, 가맹점사업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충전한 유료포인트 금액의 결제 및 예치를 관장하며, 고객이 유료포인트를 사용했을 시, 사용된 포인트를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사용수수료 2%(VAT별도)를 제외한 금액을 사용 점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전(정산 및 입금)합니다.

유료포인트 사용금의 정산은 월 단위(월 1회)로 진행되며, 상세 정산내역은 바나프레소 가맹점 어플리케이션 중 정산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당사는 충전포인트 적립제도의 운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당사가 충전포인트 충전제도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중단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가맹점사업자 및 충전포인트 충전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서비스 중단 기준일은 고객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된 게시물(공문 등)에 명시된 일자로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제 : 일금오십만원(₩500,000)

2.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에 해제 : 일금일백만원(₩1,000,000)
3.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개점예정일 이전에 해제 : 일금삼백만원(₩3,000,000)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사업 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일	
숙려기간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서 검토	14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1일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1일	
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3일	
가맹점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IV. 가맹점사업자의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시 · 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요구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차례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별도의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운영을 돋기 위한 별도의 경영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바나프레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오픈교육	회사 소개, 브랜드 기본 이해, 운영관리, 노하우, POS사용, 매장서비스 등	집단 강의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정기교육	운영실무, 고객관리, QSC교육 등	온라인 집단 강의	매년 보수교육	필수 교육
신입교육	QSC교육, 운영실무	실습교육	신입직원 채용 시	필수 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 요청 교육	개별 협의		선택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바나프레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오픈교육	5일 30시간	3,300	최초가맹금에 포함
정기교육	4시간	550	온라인교육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신입교육	5시간	440	입사시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교육	개별 협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오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오픈 승인 지연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삼성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9 1층(삼성동)
2	서울	역삼GS점	서울 강남구 논현로94길 13 예일파트빌딩 1층(역삼동)
3	서울	선릉점	서울 강남구 연주로98길 26 1층(역삼동)
4	서울	역삼역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94길 95 1층(역삼동)
5	서울	대치역점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2936 1층(대치동)

6	서울	대치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4길 14 1층 (대치동)
7	서울	역삼GFC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0, 1층 (역삼동, 성보빌딩2)
8	서울	대치포스코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6, 1층 2층 (대치동, 노벨빌딩)
9	서울	선정릉점	서울 강남구 선릉로577 1층
10	서울	강남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지하1층 101호(스퀘어플라자)
11	서울	교대역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12	서울	교대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7 1층
13	서울	남부터미널점	서울 서초구 효령로57길 1
14	서울	잠실새내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길 7 103호
15	서울	선릉역점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64(잠실동) 진빌딩 1층일부 6호
16	서울	국기원사거리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26 1층
17	서울	건대역점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1, 1층(화양동)
18	서울	문정SK점	서울 송파구 법원로 642-3 문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시티 109호
19	서울	역삼대로점	서울 강남구 논현로 427-1, 지상1층(역삼동)
20	서울	양재역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40 1층 105호
21	서울	길동역점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90, 1층(길동)
22	서울	양재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1, 1층 106호(양재동)
23	서울	한티역점	서울 강남구 선릉로 311, 지상1층 105호(역삼동)
24	서울	세관사거리점	서울 강남구 연주로 702, 라이브플렉스타워 지상1층(논현동)
25	서울	회기역사거리점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76, 1층(회기동)
26	서울	삼성타운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8길26 1층(서초동)
27	서울	경희대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4길 1, 1층(회기동)
28	서울	테헤란로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8, 안제타워 지상1층(역삼동)
29	서울	강동역점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9, 정산타워빌딩 1층 102호(천호동)
30	서울	도곡역점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09, 여천빌딩 지상1층 107호(대치동)
31	서울	포스코사거리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kb우준타워) 1층B호
32	서울	상암DMC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1층 R120호(상암동)
33	서울	선릉역사거리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5 엔제니어링공제빌딩 지상1층(역삼동)
34	서울	신논현역점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4, 삼방주유소 1층(서초동)
35	서울	을지병원사거리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58, 세양 APEX TOWER 지상 1층 103호(논현동)
36	서울	교대사거리점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8, 1층 102호(서초동)
37	서울	사당역점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 1층(방배동)
38	서울	강남역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 목화밀라트 지상1층 101호(역삼동)
39	서울	역삼초교사거리점	서울 강남구 역삼로 127, 지상1층,2층(역삼동)
40	서울	서초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서초동, 오피런스) B1층 B105호
41	서울	역삼시티점	서울 강남구 논현로85길 52, 역삼푸르지오시티 지상 1층 102호(역삼동)
42	서울	미아사거리점	서울 강북구 도봉로 45, 1층(미아동)
43	서울	서초위브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길 5, 1층 107-1호(서초동,서초동두산위브)
44	서울	합정역점	서울 마포구 양화로 72, 101동 107호(서교동)
45	서울	강남구청점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3, 청우빌딩 지상2층(청담동)
46	서울	강남효성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15, 지상1층 107호(역삼동)
47	서울	삼성중앙역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79, 1층(삼성동)
48	서울	학동역점	서울 강남구 학동로 205 1층 케이에이엔지(KANG)빌딩
49	서울	종로구청점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8 (청진동, 진학회관빌딩 1층 103호)
50	서울	숙대입구역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지상1층
51	서울	선릉위워크점	서울 강남구 선릉로 428 선릉889타워 1층
52	서울	역삼삼보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9길 5, 삼보빌딩 지상1층(역삼동)
53	서울	무교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 40, 1층 103호 (다동)
54	서울	여의도역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S-TRENUE 1층 102호(여의도동)
55	서울	신촌로터리점	서울 마포구 서강로 137 신촌센트럴코업레지던스 104호
56	서울	페럼타워점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삼성생명 페럼타워 1층
57	경기	수내역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26 동남빌딩 1층 일부
58	서울	선릉공원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21 암천빌딩 1층 2호

59	서울	언주역점	서울 강남구 논현로570, 1층 (역삼동, 여송빌딩)
60	서울	뚝섬역점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77, 104호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티밸리)
61	서울	청진타워8점	서울 종로구 종로5길 7, 1층 111, 112호 (청진동, Tower8)
62	서울	파인에비뉴점	서울 종로구 을지로100, 1층 101호 (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63	서울	보라매역점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40, 1층 (대방동)
64	서울	신촌점	서울 서대문구 명물길 14, 1~4층 (창천동, 명희빌딩)
65	서울	방배역점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7, 2층, 3층 (방배동)
66	서울	포이사거리점	서울 서초구 논현로 75, 유로빌딩 1층(양재동)
67	서울	강남역사거리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6 글라스타워 1층102호
68	서울	구로지플러스점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지플러스타워 지하1층 B114호(구로동)
69	서울	대치선릉점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37, 덕우빌딩 지상1층 101-2호(대치동)
70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점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1층 109호(가산동, 대릉포스트타워5차)
71	서울	거여역점	서울 송파구 거마로 4 굿플란트빌딩 A101호
72	서울	구로비즈메트로점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1차 1층 109호(구로동)
73	서울	낙성대역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42, 1층(봉천동)
74	경기	AK금정점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43, 2층 2011호 (금정동)
75	서울	서초법원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아스트라 제101호, 제102호(서초동)
76	서울	교육개발원사거리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7-21 동산빌딩 101호
77	서울	서소문로점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대양빌딩 1층
78	서울	약수역점	서울 중구 다산로 117, 1층(신당동)
79	서울	삼성테헤란로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9 연당빌딩 1층
80	경기	분당서현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10, 동호플라자 1층 101호(서현동)
81	인천	인천동춘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지상1,2층 108, 109, 205호 (동춘동, 연수메디칼빌딩)
82	서울	남대문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5, 1층 (남대문로5가)
83	경기	김포구래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76번길 11, 1층 103호 (구래동)
84	경기	서현CGV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19, 비전월드 1층 101-19호 (서현동)
85	경기	범계역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8, 1층 일부호 (호계동)
86	서울	구로우림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1층 102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타)
87	서울	삼성역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2, 지상1층 101호 (대치동)
88	경기	정자역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1층 101호 (정자동, 킨스타워)
89	서울	강남우성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 지상1층 104호 (역삼동, TOWER837)
90	서울	강남대로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 1층 102호 (서초동)
91	서울	당산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76, 1층 (양평동4가, 삼성화재영등포사옥)
92	서울	서울스퀘어점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93	서울	당산SK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1층 120호, 121호 (당산동4가, 당산SK V1 center)
94	서울	종각센트로폴리스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1층 RETAIL-10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95	서울	공덕역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02, 1층 103호 (신공덕동, 마포케이씨씨웰츠타워)
96	서울	논현영동시장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18, 1층 102호 (논현동, 스카이 빌딩)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년 4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45,488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 포스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811-111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상품의 용역과 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바나프레소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인근 가맹점의 현황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10곳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확인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는 제공받은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정보제공 확인

정보제공 일시 : 년 월 일
정보제공 장소 :

▷ 가맹본부정보

가 맹 본 부 : (주)바나풀에프엔비
대상 브랜드 : 바나프레소
최초 등록일 : 2022년 6월 2일
등록 번호 : 20220470
최종 등록일 : 2024년 9월 23일

▷ 가맹희망자정보

성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가맹희망자 : _____ (인)